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세 고지서등 서류의 송달을 현재 교부 및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한 것을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의2)
-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종전에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함(안 제14조)
- 기타 법령정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23조)

3.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51조의 2, 동시행령 제75조의 2, 제76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36조의 3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 또는 보조를 맞추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 조례 제6조의 2에 제3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지방세법 제51조의 2 제1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체국과 협의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하려는 것이며,
- 조례 제14조 제2항의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이 6명이던 것을 10인 이내로 확대하여, 위원회구성의 융통성을 기하려는 것이며, 제3항을 신설하여 회의시마다, 10명중 6명을 지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취지가 있으나, 개정안 제3항에 표현된 문맥상으로는 제2항에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해 놓은 문맥과 상치되는 감이 있으므로, 제3항을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에 “10인이내의 위원중”이라는 말을 삽입하여야 제2항의 규정과 문맥상 조화가 이루어져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될것으로 판단되며,
- 제23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및 제76조가 개정되어 건축물의 범위 및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가 세분화 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의 조항으로 대체 하려는 것이며,

- 기타 사항은 문맥의 명확화(제7조 제5항), 보다 세부적인 조항으로 대체(제9조)하고, 앞조항의 신설또는 변경에 따른 문맥의 조화를 (제14조 제4항), 맞추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 개정조례안 제14조의 신설되는 제3항을 제2항의 규정과 문맥상 상치되는감이 들지 않도록 함이 좋을것으로 판단됨.